##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미성년자 의제강간·간음유인(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)·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·부착명령



[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. 1. 11. 2018고합143, 2018전고11(병합)]

## [전문]

【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】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

【검 사】정재훈(기소), 최진혁(공판)

【변 호 인】 법무법인 금성 담당변호사 오동운 외 1인

## 【주문】

]

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.

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[다만 공개·고지되는 성범죄의 요지는 판시 미성년자의제강간, 각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,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13세미만미성년자강간)죄에 한한다].

피고인에게 아동·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.

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다.

피부착명령청구자에게 별지 준수사항 기재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한다.

## [이유]

1

[이유]

]

[이유]

]

【이유】

1

1

【이유】

[이유]

I ~ I TT

]

[이유]

1

[이유]

1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